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8
----------	-----

제출일자 : 2006. 2. 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이 일부 개정, 시행 [2005.1.27 법률 제7359호로 공포]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대책업무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위원은 재난방재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임원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주무담당자 된다.

라. 위원의 임기(안 제5조)

-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직기간,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해 연임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마. 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바. 의견의 청취(안 제8조)

-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참고하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2005. 11. 10 ~ 11. 30(20일간), 별도의견없음
- 마. 기 타 : 표준조례안 시달(시 방재과-5009, 2005.6.28)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 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라 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 라 한다) 관내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재난방재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임원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업무주무 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 후 7일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참고하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참고인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